#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지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565

발의연월일: 2025. 2. 28.

발 의 자:한지아・박성훈・고동진

백종헌 · 임이자 · 서지영

정연욱 · 서일준 · 정성국

유용원 · 조경태 · 김재섭

최보윤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대기환자 수와 가용병상 등 제한된 정보만을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·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이용신청 환자의 상세한 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환자연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「의료법」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연계하도록 하고, 국립암센터,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,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호스피스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한 것임(안 제28조의 2).

#### 법률 제 호

##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2제3항 전단 중 "정보연계"를 "정보(「의료법」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)의 연계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4항) 중 "이용 신청"을 "이용 신청, 자료 제공, 위탁 및 인력·예산 지원"으로 한다.
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「암관리법」에 따른 국립암센터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축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센터, 권역별센터,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

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28조의2(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 제28조의2(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 템의 구축·운영) ① · ② (생 템의 구축·운영) ① · ② (현 행과 같음) 략)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 간 (3) -----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센터, 권역별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정보(「의료법」 제23조에 따 있다.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) 범위에서 해당 센터 및 기관은 의 연계-----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계 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.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「암관리 <신 설> 법」에 따른 국립암센터, 「국 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 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죽 •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 에 따라야 한다.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정보 <신 설>

<신 설>

④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,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호스피스의 <u>이용 신청</u>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중앙센 터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축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6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정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 여 중앙센터, 권역별센터, 호스 피스전문기관에 인력 및 예산 을 지원할 수 있다.

e lee l Mil
<u>⑦</u>
<u>이용 신청,</u> 자료 제공
위탁 및 인력·예산 지원